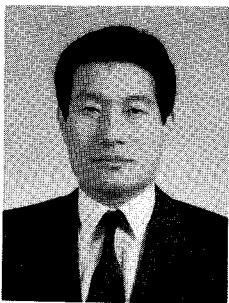


특집

'94年度 中小企業 育成施策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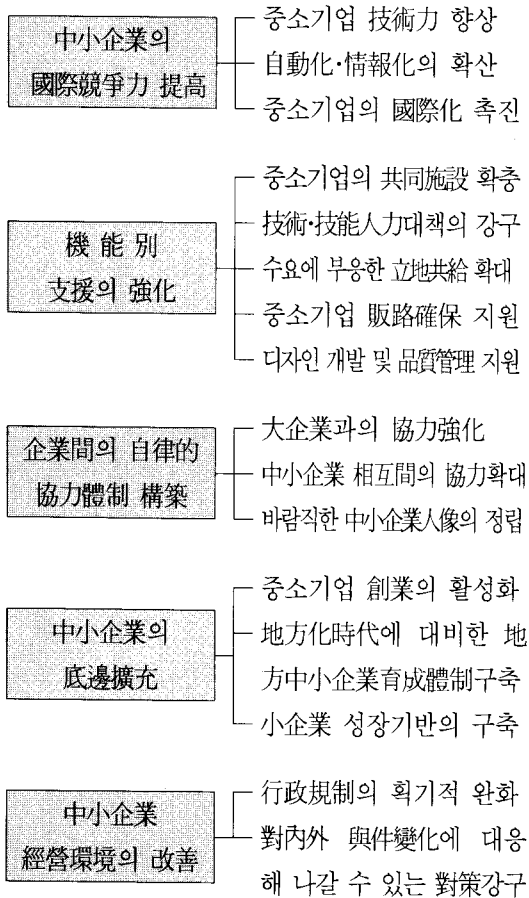
基本方向

- 『保護와 支援』위주의 시책에서 벗어나 『自律과 競争』을 촉진하여 스스로 競争力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自立基盤을 구축
 - 政府의 시책은 産業全般에 대한 波及 效果가 큰 부문에 주력
 - 個別企業에 대해서는 기업의 건설도 및 성장유망성을 감안하여 選別的으로 支援
- 企業間 相互協力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自由롭고 創意的인 企業活動을 최대한 보장
 - 中小企業 相互間 및 大企業과의 協力を 강화
 - 불필요한 行政規制를 획기적으로 개선
- 급변하는 對內外 環境에 능동적으로 對應해 나갈 수 있는 體制를 구축
 - 地方化時代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地方自治團體의 役割을 본격화
 - 對內外 與件變化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對策 강구



이 성 재
상공자원부 중소기업정책과장

〈'94년도 中小企業施策 體系圖〉



1. 중소기업의 國際競爭力 提高.

高附加價值 生産體制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技術力向上등 自生力을 배양해 나가는 한편 급변하는 對外環境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國際化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國際競爭力을 꾸준히 제고해 나갈

—'97년까지 매출액대비 技術開發 投資를 1%수준으로 제고—

가. 中小企業의 技術力 向上

- 共同技術開發의 活性化
 - 『產·學·研 共同技術開發 지역컨소시엄』 설치 확대 : ('93) 19개 → ('94) 75개
 - 公同애로기술의 協동연구를 위한 産業 技術研究組合 확대 : ('93) 70개 → ('94) 30개
 - 異業種間 技術交流의 활성화를 위한 異業種 交流그룹 확대 : ('93) 113개 → ('94) 130개
-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 技術人力交流 및 共同技術開發 활성화
- 效率인 技術指導體制의 구축
 - 技術指導를 民間중심으로 전환하고, 公共機關은 民間기관 能力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
 - 民間 技術指導事業의 活性化
 - 公공지도기관의 民間전문회사에 대한 技術指導 委託 확대
 - 금융기관 및 대기업에 의한 技術指導를 강화
 - 기술지도 전문회사 설립촉진을 위한 現행 技術指導士 制度改善
 - 국가·공공기관의 技術指導 專門化 및 相互 協力體制 구축
 - 대기업 및 연구기관의 現직 또는 退職기술자 활용을 위한 『技術者 Pool制』 실시
- 技術開發資金의 供給圓滑化
 - 工業基盤技術 開發事業資金, 特定研究 開發 事業資金등 재정자금 공급 확대 및 地方中小企業 育成資金('94년실시)의 활용

- 中小企業 專擔銀行 및 新技術事業 金融 會社의 기술개발자금 공급 원활화
- 開發技術의 事業化 促進
 - 開發技術이 商品化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자금과 사업화자금의 연계 강화
 - 國產機械 購入資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신개발제품에 대한 수요확충
 - 우수 新技術製品에 대한 品質認證으로 수요자 신뢰제고
 - 政府出捐研究所 保有技術의 중소기업 무상양허 및 사업화 촉진

나. 自動化 및 情報化的 擴散

- 民間專門業體, 公共機關과의 連繫體制구축
 - 설비공급업체, 기술용역업체, 중소기업 진흥공단, 생산기술연구원등이 연계하여 추진 단계별로 企業診斷 및 技術指導를 실시
 - 政策資金은 원칙적으로 사전지도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공급
- 自動化設備 및 核心部品の 개발보급
 - '97년까지 1,400개의 自動化設備 및 部品 國產開發 추진
- 중소기업의 각 業鍾別 特性에 적합한 標準모델의 개발·보급 추진
- 中小企業 情報化事業團의 본격가동 및 産業技術情報院의 기능강화
- 自動化·情報化관련 專門人力 養成
 - 중진공, 생산성본부 등 관련기관의 專門人力 教育訓練강화
 - 韓·日 産業技術 協力事業에 의한 자동화 기술인력 교류 확대 : ('93) 95명 → ('94) 170명

다. 中小企業의 國際化 促進

- 輸出保育事業의 실시
 - 신규수출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무역상담·해외시장개척등을 지원하여 自生力 있는 中小輸出企業으로 육성(연간 100개사)
- 海外마케팅 活動強化
 - 중소기업의 自己商標 및 共同商標개발
 - 『自己商標 輸出支援센터』의 기능활성화
 - 『海外市場 開拓基金』을 활용, 공동상표 홍보 및 공동판매장 설립 추진
 - 동구, 중남미등 신시장 중심으로 『韓國 商品 常設展示·販賣場』을 설치
 - 戰略 마케팅(Strategic Marketing Initiative)사업의 추진
 - 시장별 戰略商品을 선정, 시장개척 초기부터 최종계약단계까지 총체적 지원
 - 輸出信用保證制度의 활성화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
- 海外投資 및 海外技術協力の 活性化
 - 海外投資 調査團 파견 및 주요국의 投資環境 說明會 개최
 - KOTRA, 중진공, 수출입은행등 유관기관의 海外投資 및 海外 技術導入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알선기능 강화
- 産業被害救濟制度 積極 活用
 - 중소기업협중앙회내 『産業被害救濟 相談센터』운영을 활성화하고 업종별 조합의 산업피해구제 조직 및 기능을 확충

2. 機能別 支援의 強化

政策資金의 共給은 다수의 중소기업에 共通的으로 惠澤이 주어지는 間接支援形式의 機能別 部門에 대한 비중을 확대함.

가. 中小企業의 共同施設 擴充

- 公害業種 移轉集團化 計劃('92~'97)을 차질없이 추진
 - 업종별 전문단지들 조성하여 公害業種을 移轉集團化 : ('94)234억원 공급
 - '97년까지 염색, 도금, 주물, 피혁, 염·안료업종의 총 20개단지를 조성
- 協同化事業用 不動産에 대한 지방세 면제, 協同化團地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(50%)등 지원
- 중소기업제품 유통효율화를 위한 共同集配送센터 건립 추진
- 中小企業 共同倉庫施設 건립추진
 - ('94) 5개시설에 대해 110억원 지원(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)
- 중소기업제품의 常設 展示·販賣場의 설치
 - 大田世界博覽會의 일부 시설물을 활용하는 방안 추진
 - 시·도, KOTRA, 금융기관, 협동조합이 유기적으로 협조

나. 技術·技能 人力對策의 講究

- 技術·技能人力養成 및 訓練·研修施設 擴充
 - 中振公 기술연수 체계를 중·장기 연수 중심으로 전환
 - 2년제 야간연수과정(5개과정, 200명)

- 6개월과정(800명)신설
 - '95년까지 전국10개소의 業種別 共同職業訓練院 건립을 추진하고 '94년중 3개소 완공
 -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에 中小企業研修院 설립 추진
 - 생산기술연구원의 장단기 교육과정을 통한 專門技術人力 공급
- 就業斡旋機能 強化 및 雇傭促進 訓練 擴大
 - 就業斡旋 電算網(179개소)활용으로 구직·구인의 원활한 연계도모
 - 비진학청소년, 실업자등에 대한 職業紹介 및 職業技術教育 강화
- 遊休人力의 産業人力化 促進
 - 兵役特例制度 대상 9개 업종을 전제조업으로 확대
 - 女性人力의 活用을 위한 시간제 근로채용유도 및 공공탁아시설 확대('94 : 100개소 신설)
 - 高齡者 취업적합직종(20개)의 확대 및 高齡者인재은행(26개소)운영

다. 需要에 부응한 立地共給 擴大

- 중소기업에 적합한 工場用地 공급확대
 - 대도시 주변에 아파트型工場 건설공급
 - '94년중 4개 지역 6개동 착공 및 5개 지역 9개동 준공예정
 - 시화 및 남동공단에 각각 5만평 규모의 賃貸工團 건설 추진
 - 首都圈내 小規模 工團조성('92~'96)
 - 개발유도권역, 개발유보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내 소규모공단 배치
- 條件附 登錄工場 및 無登錄 工場에 대한 綜合整備 方案시행

라. 中小企業 販路確保 支援

- 43개 政府·公共機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: ('93)15조 2천억원 → ('94) 16조원
- 團體隨意契約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공동 판매 확대 : ('93) 2조 8,500억원 → ('94) 3조원
- 유망중소기업 제품의 常設直販場 설치 추진
- 해외주요시장에 中小企業製品 展示·販賣場 설치

마. 製品의 디자인 開發支援

- 産業디자인 開發에 의한 製品 競爭力 提高
 - '97년까지 9,700여건 디자인 開發課題를 선정, 연구개발
 - 『産業디자인包裝 振興基金』의 연차적 확대조성 추진
 - 工業基盤技術 開發資金과 工業發展基金을 지속적으로 공급
 - 디자인개발을 技術開發과 동등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
- 디자인 專門人力養成 및 專門會社의 설립 촉진
 - 산업체 소속 디자이너 보수교육 실시 : 연간 2,000명
 - 産業디자인 專門會社의 신고기준 완화 추진

바. 品質管理 및 生産工程改善

- 중소기업의 品質經營運動(Quality Management) 확산
 - 모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 品質經營 連繫體制 강화

- 공업발전기금 우선지원등 品質經營 優秀業體 우대
- ISO 9000 品質引證制度 조기 도입을 위한 여건조성
 - 『工產品 品質管理法』을 『品質經營促進法』으로 개칭하여 법적근거 마련
 - 국내 ISO 9000 引證機關 및 研修機關의 지정

3. 企業間的 自律的 協力體制 構築

中小企業과 大企業 및 中小企業 相互間的 協力을 보다 활성화하여 民間次元의 自立成長基盤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自律과 創意를 극대화함

가. 大企業과의 協力強化

- 中小企業과의 大企業間 協力基盤 조성
 - 대기업의 受給企業體協議會 구성확대 및 운영활성화
 - 指定系列化 品目(현재 1,160개)을 여건 변화를 감안, 합리적으로 조정
 - 系列化豫示制를 기계류, 부품·소재 국산화계획과 연계추진
 - 대기업의 海外投資 進出시 협력중소기업과 共同進出 적극유도
- 大企業의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擴大
 - 대기업의 수급중소기업에 대한 技術指導·人力養成 기능 강화
 - 수급중소기업에 대한 技術·人力開發 費用 稅額控除 확대
 - (현행) 지출증가분의 35% → (확대)

지출증가분의 50%

-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金融支援 확대
 - 대기업내 『受給企業 協力基金』을 확대하여 공동협력사업에 활용
 - 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에서 우대지원하는 連繫保證制度 활성화
- 대기업집단의 중소기업에 대한 自律的 事業移讓 유도

○ 公正한 受給去來秩序의 定着

-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호연계하여 自律的 協力雰圍氣 확산
- 대기업이 納品代金 決済의 법정기한을 自律的으로 遵守할 수 있도록 꾸준히 유도
- 『중소기업 계열화촉진법』과 『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에 분산, 중복되어 있는 紛爭處理節次를 일관성있게 조정

나. 中小企業 相互間 共同協力 擴大

- 協同組合의 機能 強化
 - 中小企業製品 共同販賣 확대 : ('93) 2조 8,500억원 → ('94) 3조원
 - 原資材 共同購買 확대 : ('93) 6,500억원 → ('94) 7,500억원
 - 協同組合 事業의 內實化
 - 공동기술도입, 공동전시·판매장 설치, 근로자 공동채용·훈련, 공동상표제 운영, 단체 표준제정에 의한 품질향상 등
- 中小企業의 組織化 促進
 - 협동조합 신규설립 확대 : ('93) 577개 → ('94) 630개

- 기존조합의 조합원 확충 : ('93) 45,000명 → ('94) 48,000명

- 中小企業 協同化事業 및 共同物流施設 확대

다. 바람직한 中小企業人像의 定立

- 바람직한 企業家精神 擴散을 위한 教育 및 弘報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
- 모범중소기업인에 대한 施賞으로 중소기업인의 自矜心 고취

4. 中小企業의 底邊擴充

중소기업의 원활한 創業環境을 조성하고 地方化時代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地方自治團體의 役割을 本格化

가. 中小企業 創業의 活性化

- '97년까지 10만개이상의 中小製造業體를 육성
 - 『新경제 5個年計劃』기간중 매년 5천개 이상의 창업을 유도
- 有望分野 創業誘導 및 創業成功率 提高
 - 技術集約型 創業關聯制度 改編 및 창업자에 대한 稅制支援
 - 『創業保育센터』의 설립확대로 안정성 있는 창업기업 배출
- 創業關聯 行政의 透明性提高 및 節次 簡素化
 - 創業 또는 工場設立과 관련한 일괄처리 대상 인·허가 절차의 통합고시 및 일괄 처리대상 인·허가 범위의 지속적 확대
 - 개별 법령에 의한 工場設立禁止區域을

- 시·도별로 일괄 고시
- 각 시·군·구의 『創業 및 工場設立民願室』 설치운영 및 45일내 관련 민원 처리
- 創業投資會社의 質的內實化 및 大形化로 창업자에 대한 투자 활성화
 -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에 따라 創業支援基金 차등 공급
 - 대형화 또는 합병에 대한 創業支援基金 우선공급
- 創業支援資金 供給의 擴大
 - 創業支援基金에 대한 政府出捐 확대 : ('93) 50억원 → ('94) 100억원
 - 創業投資會社 및 創業投資組合의 창업자에 대한 투자확대 : ('93) 2,000억원 → ('94) 2,300억원

나. 地方化時代에 대비한 地方中小企業 育成 體制 構築

- 地方自治團體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『中小企業育成計劃』수립·시행
 - 각 시·도는 정부의 중소기업 시책방향 하에서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『中小企業 育成計劃』을 수립, 연말까지 정부에 제출
 - 정부는 각 시·도의 『中小企業 育成計劃』을 中小企業政策審議會를 통하여 조정·확정
- 地域現地の 中小企業 經營與件 擴充
 - 『地方中小企業 綜合支援센터』의 설치·운영·One-Roof-Service 제공 및 지원기관간의 업무 연계 강화
 - 地方銀行의 資本金 확대 및 信用保證機關의 信用保證 圓滑化
 - 중소기업제품의 常設 展示·販賣場 설치

- 각 지방자치단체내에 中小企業行政 專擔組織을 설치

다. 小企業成長基盤의 構築

- 地方自治團體의 『中小企業育成計劃』수립·시행시 소기업을 배려
 - 보다 현장감있는 小企業施策을 강화
- 小企業에 대한 資金·稅制支援을 강화하고 金融利用節次를 간소화
 - 小企業의 상업어음할인 원활화 및 세계 지원
 - 中小企業 構造調整基金 및 國民銀行의 小企業 支援資金 공급
 - 少額保證制度(1억원 이하)의 활성화로 小企業 信用保證 강화
- 成長潛在力이 큰 有望小企業을 발굴·집중 지원
 - 매년 300개이상의 有望小企業을 선정, 자금지원 및 기술지도 실시
 - 종업원 1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0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비용의 80%까지 무상지원(국민은행)

5. 中小企業 經營環境의 改善

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각종 規制를 改善해 나가고 對內外 與件의 變化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對策을 강구하여 중소기업의 安定的經營活動을 도모함

가. 行政規制의 劃期的 緩和

-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는 行政規制를 '97

년까지 先進國 水準에 이르도록 획기적으로 개선

－ 각종 인·허가등 진입규제, 창업·공장설립 절차 등 총 6개분야

- 『企業活動 規制審議委員會』를 본격 가동
 - －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 규제의 필요성 및 그 정도를 綜合診斷
 - － 새로운 行政規制 緩和對象을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
- 一線 行政機關에서의 규제완화조치 이행 실태 점검체제 구축

나. 對内外 與件變化에 따른 對應策 講究

金融實名制 早期定着을 위한 補完對策

- 긍정적 效果擴散을 위한 基本與件 조성
 - － 金融實名制에 걸맞은 意識의 改革 및 건전한 去來慣行의 定着을 위한 홍보·교육의 지속적 실시
 - － 금리자유화등 金融改革의 추진 및 金融慣行의 개선
 - － 中小企業 商業어음 割引 圓滑化 도모
 - 韓國銀行의 再割引 지원 적극 실시
 - 종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웠던 零細 小企業의 경우 최소한의 자료만으로 어음할인이 가능토록 제도개선
- 中小企業의 資金確保 圓滑化
 - － 중소기업에 대한 信用保證 強化
 -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政府出捐확대 : ('93) 1,500억원 → ('94) 3,100억원
 - － 連鎖不渡防止를 위한 資金共給 및 制度補完
 - 中小企業 共濟事業基金 확충
 -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改善된 不渡處

理制度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

• 『不正手票團束法』개정으로 선의의 부도기업주는 기업회생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부여

- － 中小企業 專擔銀行의 貸出餘力 擴大
 - 政府財政支援('94) : 중소기업은행 1,507억원, 국민은행 200억원
 -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中小企業 專擔銀行 預置擴大
- － 中小企業 直接金融 調達擴大
 - 場外市場 活性化를 위한 제도적 보완 추진
 - 金融機關의 支給保證擴大를 유도하여 중소기업 會社債發行 圓滑化

- 中小企業의 税金負擔 緩和
 - － 法人稅 및 所得稅率을 각각 2% 및 1~5% 인하
 - － 중소기업제조업체에 대해 20% 또는 30%의 特別稅額減免 실시
 - － 현행 附加價值稅 課稅特例者(연간 매출액 3,600만원 미만)가 一般課稅者로 전환시 연간 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의 경우 一定率 경감
 - － 附加價值稅 면세점 상향조정 : (현행) 400만원 → 600만원

UR妥結등 開放化에 대비한 各種制度의 整備·改善

- 中小企業 固有業種制度의 改善
 - － 현 237개 업종의 解除豫示期間을 설정, 단계적으로 縮小
 - 58개 업종은 예정대로 '94.9.1부터 해제
 - － 解除豫示期間내 고유업종영위 중소기업의 競爭力向上도모

- 團體隨意契約制度의 改善
 - 高 유업종 해당품목이나 경쟁력을 확보한 물품은 段階的으로 除外
 - GATT 정부조달협정에의 가입과 관련하여 동 制度의 改善方案 검토
- 中小企業 關聯 金融制度를 합리적으로 개편
 - 중소기업관련 政策金融을 特殊銀行에서 전담토록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韓銀 재할인분은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
 - 현행 中小企業 義務貸出比率制度는 유지하되 금융자율화에 바탕을 둔 신용

대출관행이 정착된 이후 단계적으로 완화 추진

- 현행 8개 中小企業 關聯法令 내용보완 및 통합 단순화 추진

環境問題에 대한 對備策 강구

- 地球環境問題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제고
- 에너지 節約型 經濟構造로의 개편추진 및 資源再活用 對策樹立
- 環境汚染防止基金 용자지원 확대
 - ('93) 290개업체 290억원 → ('94) 400개업체 400억원

전안

전기용품 표시에 관한 규정 안내

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1종 및 2종 전기용품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는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(공업진흥청고시 제92-254호, 개정 '92. 6. 4)에 의한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그러나 전기용품 사후관리결과 일부 전기용품의 표시사항이 동 규정에 부적합한 사례가 있어서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전기용품 제조 및 수입판매업체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- 주요표시위반사례 :
- 제조년월일 미표시
 - 정격소비전력 미표시
 - 상 미표시
(정격전압(110V초과 제품))
 - 옥내외용 구분 미표시
 - 한글 미표기
 - 접지 미표시 등